

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관 개정(안)

법무처장 : 조미숙 ☎3410-7913 송무부장 : 강기연 ☎7920 담당 : 김예정 ☎7922

ESG 중심 경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책임있는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위해 공사 정관을 개정하고자 그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함

I

관 련 근 거

- 「상법」 제393조의2 (이사회내 위원회)

상법 제392조의2(이사회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-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-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-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-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
-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황상하 사장 취임사 (‘24.12.30.)

취임사 中 핵심정책 7. ESG 경영 강화

공사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ESG 요소를 통합하고,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것

II

추진경위

- ‘25. 3.26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관 개정(안) 제411회 이사회 의결
 - 의결사항 : 정관 제24조(의결사항), 제28조(의결방법), 제29조(의사록 작성) 개정 및 제28조의2(이사회내 위원회) 신설

Ⅲ 주요 개정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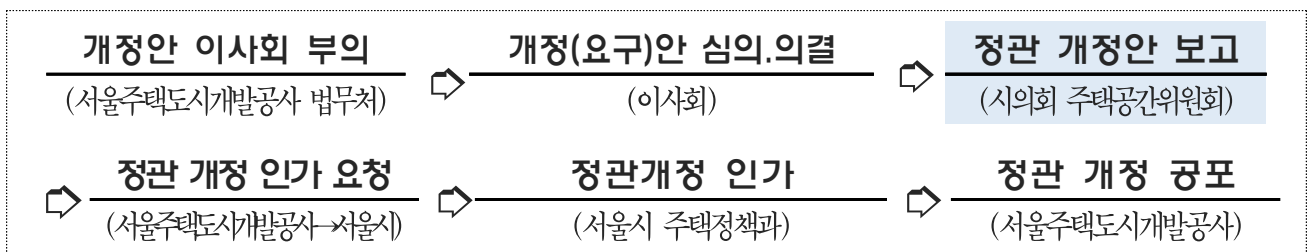
□ **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관련 조항 개정으로 ESG중심 의사결정 체계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**

- 제24조(의결사항) 제20호 **신설**
 -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
- 제28조의2(이사회내 위원회) **신설**
 -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, 상법을 준용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해 위원회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

Ⅳ 향 후 계 획

- '25. 9. : 정관 개정 인가요청(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→ 서울시)
- '25. 10. : 정관 개정 시장인가(서울시)
- '25. 10. : 정관 개정 공포

< 참고 > 정관 개정 절차



[붙임]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관 개정(안). 끝.

[붙임]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관 개정(안)

현 행	개 정	비 고
제 24조 (의결사항)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 결을 거쳐야 한다. 1. ~ 19. (생 략) 〈신설〉 <u>20. 그 밖에 공사운영에 필요하</u> <u>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</u>	제 24조 (의결사항)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 결을 거쳐야 한다. 1. ~ 19. (현행과 같음) <u>20.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·운</u> <u>영에 관한 사항</u> <u>21. 그 밖에 공사운영에 필요하</u> <u>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</u>	○ 이사회 의결사항 추가 -이사회 내 위원회 관련 사항
〈신 설〉	<u>제28조의2 (이사회내 위원회)</u> <u>①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</u> <u>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</u> <u>다.</u> <u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</u> <u>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</u> <u>세부사항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</u> <u>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</u> <u>의 의결로 정한다.</u>	○ 「상법」 제393조의2 (이사회내 위원회)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 회에 위임할 수 있다. (이하 생략)
〈신 설〉	부 칙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.	

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관 제 호

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관 개정

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현행 제20호를 제21호로 한다.

20.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
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의2 (이사회내 위원회) ①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